

박형준 / 5월 / 기출 GS / 6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응시인원
541756	15	11	18.5	9.5	54	1	3.03%	5	33
542816	16.5	7	17	11.5	52	2	6.06%	5	
542898	15.5	10	16	10	51.5	3	9.09%	5	
542870	14.5	8.5	17.5	8.5	49	4	12.12%	5	
542754	13.5	9	18.5	7	48	5	15.15%	5	
541730	14.5	8	16	9	47.5	6	18.18%	4	
541736	15.5	7.5	15.5	7.5	46	7	21.21%	5	
542796	15	6.5	16	8	45.5	8	24.24%	4	
541771	15.5	7.5	14	7.5	44.5	9	27.27%	4	
542750	13.5	8.5	15	7	44	10	30.30%	4	
542783	15	0.5	18	10.5	44	10	30.30%	5	
542784	15	6.5	16.5	6	44	10	30.30%	5	
541742	12.5	9	13.5	7.5	42.5	13	39.39%	4	
542805	15.5	1.5	15	9.5	41.5	14	42.42%	5	
542869	14	5	15.5	7	41.5	14	42.42%	4	
542778	12.5	7	15	6.5	41	16	48.48%	5	
542098	12	8	14.5	6	40.5	17	51.52%	5	
542866	13.5	9	13.5	4.5	40.5	17	51.52%	4	
542015	14	7	14	4	39	19	57.58%	5	
542777	12	5.5	15.5	5.5	38.5	20	60.61%	5	
542873	13	6.5	14	4.5	38	21	63.64%	5	
542892	15.5	0	14.5	8	38	21	63.64%	6	
541782	11.5	5.5	14.5	6	37.5	23	69.70%	5	
542922	10.5	6.5	13.5	6.5	37	24	72.73%	6	
542806	9	5	16	5.5	35.5	25	75.76%	5	
542914	14	0.5	13.5	7	35	26	78.79%	5	
535255	7.5	6.5	12	7.5	33.5	27	81.82%	5	
542832	14.5	0	13	6	33.5	27	81.82%	6	
542799	9.5	5.5	11.5	4	30.5	29	87.88%	5	
542790	11.5	5.9	12.5	0	29.9	30	90.91%	5	
542786	12	0	7.5	6	25.5	31	93.94%	4	
542785	6.5	4.5	10.5	3.5	25	32	96.97%	5	
542688	11	8.5	2.5	0	22	33	100.00%	5	

<p>박형준/5월/기출GS/6회/1번</p>	<p>채점자</p>
	<p>윤영우</p>
<p>1. 전반적인 총평</p> <p>총 4개의 설문으로 구성된 문제로, 물어보는 논점이 비교적 명확하여 대부분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공용성과 관련하여 전용품에 다른 구성요소가 결합되어 우수한 작용효과를 갖는 경우 간접침해의 인정 여부를 물어보는 설문이었습니다.</p> <p>공용성과 전용성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간접침해 판단의 경우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각각 목차를 나누어 사안 포섭을 하실 경우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p> <p>(2) 설문 2</p> <p>마찬가지로 공용성과 전용성 판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균등론의 일반론을 작성하신 경우에도 점수를 드렸습니다.</p> <p>(3) 설문 3</p> <p>방법발명의 소진이론에 관해 물어보는 설문이었습니다. 방법발명의 실질적 구현 여부에 대해 간단히 포섭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판례의 키워드를 포함하여 두껍게 포섭해주셔야 합니다.</p> <p>(4) 설문 4</p> <p>전용품과 대비되는 물건의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가 가능한지 물어보는 설문이었습니다. 관련 판례, 학설, 검토를 키워드를 포함하여 알맞게 작성하신 경우 점수를 드렸습니다.</p> <p>다만, 확인대상발명의 적법 특정 여부에 대하여 작성하신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 논점에 벗어난다고 생각하여 점수를 거의 드리지 않았습니다.</p>	

3. 소결

설문 1-3의 경우 사안 포섭이 빈약한 경우가 몇몇 있었습니다.

위 설문의 논점들은 출제될 수 있는 중요 논점이므로 적어도 사안 포섭을 할 때 어떤 키워드를 사용할지 정도는 생각해두시길 바랍니다.

<p>박형준/5월/기출GS/6회/2번</p>	<p>채점자</p>
	<p>윤영우</p>
<p>1. 전반적인 총평</p> <p>프랜드 선언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논점들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침해금지청구소송의 조문을 작성하신 경우에도 점수를 드렸습니다. 대부분 정답을 잘 맞춰주셨습니다.</p> <p>(2) 설문 2</p> <p>결론을 반대로 작성한 경우가 몇몇 있었는데, 甲의 침해금지청구 경위를 보았을 때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p> <p>설문에 없는 판례나 일반론이어도 타당할 경우 점수를 드렸습니다.</p> <p>(3) 설문 3</p> <p>가처분의 의의, 취지와 요건은 대부분 잘 작성해 주셨으나, 가처분의 요건별로 검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처분이 승인될 수 없는 논거에 대하여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모두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p> <p>3. 소결</p> <p>2문의 경우 판례를 아예 작성하지 못하시거나 논거를 빈약하게 작성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p> <p>프랜드 선언의 경우 중요 논점은 아니나 기출된 적이 있으므로 판례를 암기해 놓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p>	

<p>박형준/5월/기출GS/6회/3번</p>	<p>채점자</p>
	<p>윤영우</p>
<p>1. 전반적인 총평</p> <p>정정심판의 경우 문제될 수 있는 논점으로 구성된 3개의 설문과 결합발명의 진보성에 대해 물어보는 설문으로 구성된 문제였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다들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답안에 없더라도 타당한 경우 점수를 드렸습니다.</p> <p>(2) 설문 2</p> <p>정정심판의 인용심결 확정이 재심사유가 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설문이었습니다. 대부분 잘 작성해 주셨으나, 설문 3에 작성할 일반론을 설문 2에 작성하신 경우가 몇몇 있었습니다.</p> <p>(3) 설문 3</p> <p>마찬가지로 설문 2에 작성할 일반론을 설문 3에 작성하신 경우가 몇몇 있었습니다.</p> <p>설문 2에서는 인용심결 확정의 경우 무효심판 사건의 처리에 대해 물어봤으므로 재심사유가 되지 않아 정정 전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으로써 본안판결을 해야 한다고 작성해주셔야 합니다.</p> <p>반면에 설문 3의 경우 甲이 상고심이 정정심판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이는 법원의 재량에 해당하여 이와 같은 주장이 부당하다고 작성하시는 편이 타당해 보입니다.</p> <p>(4) 설문 4</p> <p>결합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설문으로, 대부분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역교시, 기술분야, 이차적 요소 등을 작성하신 경우에도 점수를 드렸으나, 이 경우에도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방법이 메인이 되어야 합니다.</p>	

3. 소결

다들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헛갈린 논점 등은 기본서에 표시하여 여러 번 반복해서 복습해 주세요.

<p>박형준/5월/기출GS/6회/4번</p>	<p>채점자</p>
	<p>윤영우</p>
<p>1. 전반적인 총평</p> <p>4문까지 시간 관리에 유의해 주세요 적어도 10분 정도는 남겨두고 3문까지 풀이를 완료해주셔야 합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의사에 반한 공지라고 작성하신 경우가 몇몇 계셨는데, 乙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하지 않은 甲의 의사를 보았을 때 의사에 의한 공지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p> <p>복수의 공지 논점을 누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지 행위가 2번 이상 등장하는 경우 복수의 공지 판례가 논점이 됨을 짚고 넘어가 주세요.</p> <p>(2) 설문 2-1</p> <p>국내에서 기본발명과 개량발명을 하나의 출원으로 보호받기 위한 방법으로 국내우선권 주장에 대해 작성하는 설문이었습니다.</p> <p>공지에외주장을 누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설문을 풀실 때 설문의 사실관계 외에도 문제의 사실관계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p> <p>(3) 설문 2-2</p> <p>조약우선권 주장에 대해 작성하는 설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지에외주장을 누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p> <p>3. 소결</p> <p>어느덧 기출 GS를 시작한지도 3주가 경과했습니다. 3주간 주말에 나와서 답안 작성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마지막 한주도 열심히 하셔서 원하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p>	

(2) 권양성 여부

1) 권양성 권양이 부가되어 다른 통과의 생략가능 인내의 권양성 부분이 여권의 특허생략의 인내에 다른 통과가 있다면 타통과를 인정할 수 있다.

2) 식별

C에 D의 부가된 C 부가된 다른 통과의 생략 안지이면 (GTD)는 여권의 특허생략 인내에 다른 통과가 있다면 안지 이된다.

(3) 각각항에 개연성 판단

(GTD)는 (A+B+C+D)의 생략에 사용되고, 이용항에든 각각 항에 든 유형이므로, 각각항에 개연성도 높다.

4 식별의 해적 2 경우 다양성

1) D의 부가된 다른 통과의 생략 안고, (A+B+C+D)에서 (A+B+C)의 생략의 양해성이 생략된 경우 다양성 있다면 (GTD)도 여권의 권양성으로, 2의 경우와 개연성이다.

2) 권양이 부가되면 권양성 부가되면 권양에 권양 양이 부가된 항대항에 대해 되어 부가한다. 2의 경우와 부가한다

개연성도 있다.

3. 내용의 개질

이에 특허성명 분야에서 다른 용어가 있고, (A+B+C)이 (A+B+C)의 관용어가 아니라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
2의 피대상 개질항목을 분석 있다.

5

Ⅲ. 4문 (3)

1. 권리요건 이론

1) 특허권. 통상 1차적 특허성명이 실현된 통상 3차까지
각항목에 양도하면 2차 통상 2차에 대해서는 특허권 목적
상당성이 인정되고 양도인의 사용. 양도 행위에 특허권 이르기
안하므로 이르지.

2) 개질요건. 통상의 개질된 통상 1차적 개질이 인정된다.

2. 방법성명에 권리요건 인정 여부

1) 방법성명 권리요건 여부 (원칙)

방법성명 특허권은 방법성명 단독으로 실현된
통상은 각항목에 양도한 경우, 2 통상 2차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무효를 인정하며 인정되고, 양도인이 2 통상은 이통하며
방법성명도 상당한 개질에는 특허권이 이르지 않는다.

2) 방법성명 인정요건은 통상의 개질 (원칙)

특허성명에서 어느 것에 다른 용어를 갖는지, 기원서에서
해명이 되는 경우 및 관행상, 방법성명에 이르지 않는다



3

IV 식물 (4)

1. 개성

방법식명의 기술내용 특이성상식명으로 특징지어 권리범의
상한정수를 넘지 않게 된다.

2. 권리범의 확인방법 (조항 135)

특이성 상이·인용 제권 개성, 특히식명의 개성인
특이성으로 확인하는 방법이다.

3. 권리범의 확인방법에 대한 상세한 개성

(1) 방법식명의 경우 (특이성)

조항 135에서 특히식명의 난쟁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권리범 상한정수를 넘지 않는 나, 조항 135(2)에서
방법식명의 식물이인 사용된 문헌도 형태로 강조하면,
방법식명의 식물이인 사용된 문헌도 특이성상식명으로
특이성으로 권리범의 확인을 할 수 있다.

(2) 권리식명의 경우

강령 조항의 카탈로그 나인 등에 인정한다.

4. 문헌의 개성

, 강령조항은 특히식명의 난쟁이를 어떤 식물이인
강령조항을 넘지 않게 권리범의 확인방법에 관한 수
경계로 있다, 강령조항은 개성으로 특징 개성,
강령조항은 식물이인 난쟁이를 권리범에 확인하는
원인, 강령조항을 식물이인 권리범의 확인방법은 "특이성"

4

[문제-2]

1. 형태권리인 (상표권)

형태의 권리 범위 위하여, 특허권자는 형태권에 대해 형태권이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2. FRAND 선언한 특허권자의 의무

(1) 일반

FRAND 선언은 해당 업계의 표준특허 보유자가 공정한 관행적인 비차별적 권리로 라이선스를 허가하는 선언이다.

(2) FRAND 특허권자의 의무

"공정하게" 공정한 관행적이며 비차별적인 권리로 선언을 허가할 의무를 갖는다. FRAND 선언이 다른 선언허가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3. FRAND 특허권자의 형태권리 침해

(1) 유죄

FRAND 선언을 한 특허권자는 특허가 유효함을 전제로 관행적인 선언을 인정하며 상당하게 권리 행사는 적당하게 형태권리 행위를 관습적으로 한다.

(2) 무죄의 경우

① 甲이 FRAND 선언을 했지만 사실적으로 형태권리행위를 관습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이다. ② 乙은 甲 특허가 유효함을 전제로 관행적인 선언을 적당하게 선언행위에 온 다량에 대해 甲은 乙에 대해 형태권리 행위를 관습적으로 한다.

4. 甲의 특허권 침해 여부

(1) 침해 여부

근로 甲 회사원이 이 다른 제품을 만들어 甲 회사에 제공하였다.

(2) 인용 여부

甲의 특허권이 권리상용이 아니므로 인용으로 인정된다.

2.5. 甲의 인용 (2)

1. 특허권의 권리상용 제한

1) 甲의 특허권 침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 (명백 2건)

2) 특허권도 재산권이므로 권리행사가 남용이 되지 않도록 인정된다.

2. 甲의 권리상용 여부 (1건)

1) 甲이 乙에게 원료를 제공 목적은 乙에게 이익이 되기 안다면 乙에게 권리를 주는 행위를 한 사실이 남용이 없다.

2) 甲이 표준특허권자의 지배적 위치를 남용하여 乙에게만 불리한 선점권을 설정한 일이 없다.

3. 2 주체의 타당성 (1건)

2의 권리상용 주장은 부당하다.

45

II. 실용 (3)

1. 황폐금지 가치불 (임시권행법 300조)

사리의

황폐 황폐를 막기 위하여 불합응 권에 임시적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

(2) 요건

① 피보전채권과 ②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甲의 피보전채권

수동(사)에의 한한 비위 같이 甲은 2개 차례 황폐금지 청정권 가치므로, 황폐금지청정권 피보전권으로 주장할 수 있다.

3. 甲의 보전의 필요성

(가) 보전의 필요성 인정 정도 (특례)

- 1) 특히 황폐 금지 가치불과 같은 인적적 가치불의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정도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2) 특히 양이 무효로 된 가등성이 높다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나) 채권 특회정기의 가치불 보전의 필요성 (특례)

강한 황폐가 인정되더라도 영근(채권자)에게 발생가능한 손해는 향후 공익으로 인정가능한 선도를 상충하여 손해 배상가능하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금부할 위험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3) 사물의 경우

상업적 이용의 관행 관행에 대해서

甲이 2의 관행 중의 관행을 상용화하는 별다른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다.

4. 관행 승인 여부

甲은 피발명행위와 상응하여, 별다른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관행에 승인된 것이다. 끝

[문제 3]

6. 5

I. 사물 (1)

1. 관행의 존재

상업적 관행의 관행 중의 관행 모두 특허권인 사물의 관행에 해당 없음 후에 상업적 관행으로 보통 관행으로 인정된다. 이하 비교 관행이다.

2. 관행의 인정 범위 (선출 136)

특허권이 인정되는 관행은 특허권 행사가 가능한 관행에 있어 이를 관리하고 관행을 행위 하기 가능하다.

3. 관행 중의 관행 인정 범위

(1) 관행

특허권자의 관행인 관행은 관행의 관행으로 관행에 관행을 관행하게 관행이다.

(2) 관행

상호 내의 양행은 타행과 상호간에 대한 관리는 상호 쌍방을 쌍행하여 불쌍행권을 가진다.

3) 양행 종류

- ① 특허취득권 행사 시 양행 (제 132조)
- ② 무효상대 양행 (제 133조)
- ③ 양행무효상대 양행 (제 137조)가 있다.

4. 양행상대 양행권 대외 효력

- ① 특허권이 양행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양행의 효력이 인정되면, 대외로는 양행상대 양행권과 양행권이 있다.
- ③ 부속적인 양행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
- ④ 제3자가 행한 양행행위에 대해 양행무효상대양행권 수 있다.

5. 양행상대 양행권 대외 차이점

- ① 양행상대도 특권 양행이고, 양행권은 상호 내 기행권 행사로, 특권 양행, 특허사기, 불쌍행 등이다 차이가 있다.
- ② 양행상대 내에서는 양행권대외 양행권은 불쌍행권 행하면, 양행권은 대외적 차이가 있다.
- ③ 양행상대 특권을 무효상대에 영향이 있다, 양행권은 각법제면 무효에 대한 양행 권리가 있다.

3

II. 4문 (2)

1. 장광상권의 소멸 (선출 136.9)

장광상권이 등록되면 장광 후 명세자로 출원, 출원, 일관등록인
것은 아니다.

2. 장광상권 등록이 무효상판의 재상권이 타는 경우

(1) 장광

장광상권 등록이 소멸은 무효상판 소멸의 경우에
무효상판 소멸의 경우 2015.10.18 소멸
재상권이 소멸한 것임이 틀림없다.

(2) 강제 출제

장광상권 등록으로 상권 재상권 간소 등록한 사실이 없기
재상권이 타는 아니다.

(3) 권리 출제

1) 장광상권 등록으로 출제상권이 소멸·등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2) 출제상권이란 재상권이 아닌 권리
3) 등록이후 권리 이유로 재상권이 타는 아니기 때문이다.

(4) 장광

비판적태도 없다, 장광상권 후에 장광 무효상판에나 출제로
장광상권이 가능한 것, 재상권도 무효상 판인가 타는 아니다.

3. 4문의 개념 - 무효상판 소멸의 시기

1) 장광상권이 소멸 후 등록 또는 소멸되었거나도 재상권
취득되기 안한다.

2) 소멸기까지 등록상권을 매기. 안정되기 않고, 장광 권 소멸한다.



상기를 계속한다.

2

III 식음(3)

1. 상호출처의 변형개량 (제164)

특례는 제164에 따른 상호출처의 출구는 법원 개량대상 이면 아니거나 있다.

2. 광범위한 계속 또는 무한정 상영의 권리

(1) 상하 공간 및 (특례)

광범위한이 계속 권리로서 상영권 상영 권리를 중단해야 할 수 있고 아니라고 하였다.

(2) 영사대행

광범위한 영사대행 상권을 계속한다.

3. 甲 출처의 타당성

1) 광범위한이 계속 권리로서 상호 출처 부분은 법원 개량 사항이며, 상영권이나 광범위한 영사대행 상권을 계속 할 수 있다.

2) 甲의 출처는 부당하다.

IV

식음(4)

1. 저작발명 여부

甲 발명이 구성요소 각각에 합쳐진 저작 발명이다.



2. 권리상속 권리상속 제한 법의

(1) 권리상속 (호구 2)

기존상속인 ^{상속인} 위하여, 특수한 상황도 판단.

(2) 제한상속인 권리상속 제한대상 (특제)

각 상속인이 유기적으로 결정한 가환 대상이 제한대상이다.

(3) 제한상속인법 (특제)

상속인이 특수한 관계에 관여하여 권리의 인양을 피해하고, 결정한 권한 권리의 특수한 형태로 관여한다.

(4) 상속물권 제한 (특제)

상속물권을 제한하면 속기상속인에게 이름 우 있는 양이. 특수한 상속물권이 개시된 일 후, 후원 상의 재산 양에 비하여 중의 기속 기속 유에 제한을 유하는 정에 관한 가능 하다.

(5) 예상에 관한 상속물 (특제)

공리 기속 기속 예상 관한 상의 이상 상속 물에 관한 권리 상속 인이 안정 하다.

(6) 사후 관한 공리 (특제)

권리 상속 인의 개시 상속 물에 관한 권리 상속 인이 무제한 상속 인의 명을 알고 있을 경우 에는 권리 상속 인이 상속 물을 유하는 정에 관한 가능 하다.

3. 식물의 재조합 - 甲의 생명실험

(1) 양배

각종 A, B, C의 식물 생명실험에 유리한 씨앗으로 각자 실험을 할 수 있는 유전적으로 완전한 양배가 반대쌍이기 때문이다.

(2) 생명실험 완전양배

생명실험에 甲 실험에 이르기까지 양배가 완전이었던 것은 유전적으로 완전이었던 양배가 완전이었던 양배를 수컷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3) 양배의 유전형질 특이성

甲 실험에 양배로 완전양배로 생명실험에 완전이었던 완전이었던 양배가 완전이었던 양배로 완전이었던 양배를 수컷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4) 식물의 재조합

생명실험에 완전이었던 양배는 완전이었던 양배를 수컷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완전이었던 양배가 완전이었던 양배를 수컷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55 [문제-4]
1. 식물의

1. 유전자의 재조합 실험 (1930)

수컷 양배를 수컷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각각의 양배 양배에 대해 1년 내 완전이었던 양배를 수컷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강조한다.

2. 용역의 양적 한도

(1) 당사에게 기한 용역 (특허)

수용자의 당사에게 기한 용역이기에 타법 되고, 국한 용역
해야 하거나, 자기 수용양을 넘어서는 것은 아니다.

(2) 당사에게 발생한 용역 (특허)

나중에 당사인의 권리. 리셀 등으로 수용이 유출되고 이를
타인이 실행한 것이다.

(3) 수용의 경우

1) 당사에게 기한 용역 여부 (특허)

① 특수 용역의 경우이기나 그리 비록 수용양을 넘어서

비록 수용한 사람이 되어 받는다.

② 특수 용역의 경우의 경우로 그리 건별을

거래처를 넘어서, 그리 대한 용역을 수용자에게는 당사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

③ 특수 용역의 경우나 나중에 권리. 리셀로 특수

당사에게 나중에 수용 용역인 사람이 약으로

당사에게 기한 용역이다.

3. 용역의 양적 한도

(1) 특수 용역의 경우 (특허)

특수 용역에 대해나는 용역의 경우 하거나, ① 특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특수로 인정하는 특수



4. 권리 (신국사 3)

상업·명목에 정식으로 기재된 특허 권리
기타의 권리 기재하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신출판으로 판정권이 인정된다.

III. 권리 (리-2)

1. 지식재산권 귀속제도 (신국사 4)

상업적 목적을 위한 권리, 지식재산권에 상응한 범위에
관하여 판정권이 인정된다.

2. 권리

- ① 지식재산권 권리자인 권리
- ② 양도인인 2015. 8. 3 부터 1년 내
- ③ 처분·정리권 등을 상응한 범위에 관하여 인정 권리에
관하여 판정된다.

3. 권리

처분의 권리, 처분권, 양도권, 권리, 1년 내 내
증명서류 제출해야 한다. 원본은 행정청을
제출할 수 있다.

4. 권리

무엇을 권리 취득 명목에 범위에 상응한 판정권이
2015. 8. 3 에 인정된다.

45

[문제-10]

1. 선택권(1)

1. 직접선택권 부여, 권리 - 제127조

특허권과 보호를 위하여, 직접선택권은 아니지만 특허의 제연성이 높은 행위를 특허로 간주해 주는 제도이다.

2. 물건발명의 경우 - 제127조 1항

물건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생산, 양조 등을 하는 경우 특허로 본다.

3. 전용품에 구성부가 - 제129조

(1) 인정

전용품에 구성을 추가하여 진본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떤지 전용품을 업권자의 사용라고 믿는 이상" 될 때가 성립한다.

(2) 검토

이용권이라도 침해에 해당하므로, 직접선택권 기능은 고려할 때 해당한다.

4. 사안

(1) 전용성 공간

D의 부가권 인하여 (에 다른 용도가 발생하든 지



불분명하다.

(2) 공용성 문제

① C+D는 특허발명을 이용한 물건 A+B+C+D의
생성에 사용되는 물건이다. ② 따라서 공용성이 인정된
다.

(3) ~~결론 - 제 121조의 해당~~ 극강 부강

전용성 충족 여부를 명확히 하지는 않지만, 단순히 D의 부가
로 인하여 제 121조의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극강은 부강하다.

4. 실문 (2)

1. 간접침해 권리 - 시시

간접침해는 비록 직접 침해는 아니지만 직접침해 그
판단기준에 의하여 간접침해의 거액성이 높은 행위
를 함해 본와 특허권의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는 것
이 그 취지이다.

2. 공동 물건 공용성 - 시시

(1) 시시

특허발명의 생성에만 사용되는 물건과 공동한 제품을
업으로 생산, 양도 등의 행위 수반 간접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결론

특허권의 일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침해 공증권을 일
시판바, 공증제품도 간접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게 비
감각하리.

3. 사안

(1) 공용성 판단

- ① C'는 C와 균등한 물건이다.
- ② C'는 ~~특허발명~~ A+B+C'의 생산에 이용되는 물건이다.
- ③ A+B+C와 A+B+C'는 균등한 제품에 해당한다.
- ④ 따라서 C'는 공용성이 인정된다.

(2) 전용성 판단

- ~~① C'에 다른 용~~ ① C'는 C와 균등한 물건이다.
- ② C'에 다른 용도가 발명하는지 불명확하리
- ③ 다만 전용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리.

4. 결론 - 제127조 침해에 해당

공용성과 전용성이 인정되어 결론 C'는 간접침해가 인정된다.

4.5. 명목(3)

1. ~~방법발명의 경우~~ - 제127조 2항

~~방법발명의 실시에만 이용되는~~ 물건을 생산, 양조 등

라는 경우 긴급침해에 해당한다.

2. 특허권 소권 이권 의미, 취지

특허권라 함은 실시권자로 부터 정당하게 양도 받은 물건은 그 특허권이 소권된다는 이론으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특허권자 이종이득 방지가 주 취지이다.

방법

3. ~~특허~~발명의 경우 - 실시

방법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가 방법 발명을 '실질적인' 구현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 방법 발명이 특허권은 이미 목적을 달성하여 소권되므로, ~~그 방법~~ ~~발명~~ 물건을 이용하여 방법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하여 특허권에 조력이 미치지 않는다.

4. 논거

① 특허권자 이종이득 방지, ② 물건의 자유로운 유통 및 거래 안전, ③ 방법 발명을 소권 처상에 제외하면 소권 유익이 크게 회복될 수 있는 점 등을 논거로 하였다.

5. 사안

(1) 실질적 구현 여부

* 물건 (는) ~~발명~~ 무 발명의 전용품으로서 방법 발명

3.5

실시에만 사용되는 전용품으로서 그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물건에 해당하고, ~~이~~ (이 항목에서) ~~같은~~ 방법발명의 ~~특허~~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므로, (이 항목으로 인하여) 방법발명의 특허권이 소권리 없다고 볼이 합리적이다.

6. 결론 - 비침해 해당

특허권이 소권된 이상 ~~특정~~ 특정 실시행위는 침해가 아니다.

IV. 서론(4)

1. 권리범위특수인 심판 의미, 권리 - 제 135조
발명의 존속기간 예상을 위해 특허청에 보호범위 속보
신청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2. 전용품을 특이대상발명으로 특정 - 시시시

(1) 시시시 - 간접침해 심리판단 "가능"

판례는 제 127조 제 2호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생상~~ ~~양도~~ 등을 하는 행위를 특허권 침해로 인정하는 이상,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특이~~ 대상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2) 결론



간접침해도 특허권의 침해로 보는 이성 보도발위
 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불평의 조속한 예방이
 가능 ~~특히~~ 권리범위적일때의 침해를 구제
 할 때, ~~이~~ 전용제품 권리범위적일때의 처당물
 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정 - 심판 적법

무슨 전용제품 (와 대비되는 물건은 심판청구여 타당
 이 되는 바 명으로 특정하여 권리범위적일 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27

[문제-2]

25
1. 질문(1)

1. 특허권리행위 의미, 취지 - 제126조

특허권리 보유권 위대하여 특허권 행위의 권리를 행
 구할 수 있다.

2. 프렌드 선언 의미, 취지

기술발견 특권을 위대하여 특정 기술에 대하여 공평하고
 (Fair), 합리적이며 (Reasonable), 비차별적인 (Non
 Discriminatory) 라이선스를 위대하여 특정 조건하
 특허권 행태를 묻지 않게 하는 선언이다.

3. 2의 침해여부

① 2은 甲의 처각을 받지 않고, ② 이대권 발명은 법
 인코사, ③ 실시 (제23조 ~~3항~~) 하였으므로 침해가 성
 립한다.

4. 프렌드 선언 관련 ~~문제~~

프렌드 선언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침해가
 인정될 수는 없다.

5. 결론 - 인용 ~~문제~~ 판결

같은 무의 특허권을 얻으므로 닮더라면이며, 프렌즈 선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무의 동의를 받기 쉽
 순이긴 핏헤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인용 판권이 예상된다.

II. 석물 (2)

1. 권리범용 의미, 취지 (민법 2조 2항)

특허권도 재산적인 이상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2. FRAND 선언과 권리범용

(1) 시정제

FRAND 선언을 하였다는 시정만으로 곧바로 핏헤
 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개별적으로 판단한 후에
 가 한다.

(2) 특허 검토

~~특허~~ 프렌즈 선언을 하였더라도 특허권과 "대가 확보
 기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시안 - 조약상 부당

① 프렌즈 선언을 하였다는 시정만으로 곧바로 핏헤가
 부당하다는 것은 아니다.

② 같은 무의 제약을 받기 않고 이대건 발명은 얻으므로

상시 하였다.

③ 이에 따라 특허 대가 조약의 적용이 유효하다.

④ 따라서 특허 권리금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금 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결국 그의 주장은 부당하다.

2.5

IV. 결론 (3)

1. 가처분 의미 - 원시권행법 300조

원시권리를 침해 위한 조처이다.

2. 요건 - 원시권행법 제 300조 2항

권리관계에 끼어 들어간 당사자 피위거나 공백권 위법
을 막기 위한 경우제 하여야 한다.

3. 사안

① FRAND 성질을 무시하였으므로, 특허 그는 이와 대해
상대등의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따라서 "권금성 요건"이 결여되어 가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4. 결론 - 승인 불가

결국 가처분은 승인될 수 없다.

(2)



[문제 -3]

I 석출 (1)

1. 특허 무효심판 절차에서의 결정 청구

(1) 무효심판 절차 나머지에서의 결정 청구 의의, 취지 - 제 133조의 2
특허권과 방위권 보장을 위해 무효심판 절차 안에서 특허권을 보충 결정할 수 있다.

(2) 즉체적 요건 - 제 133조의 ~~2~~ 2 제 1항

특허권자가 청구 가능하다

(3) 시기적 요건 - 제 133조의 2 1항

① 답변서 제출기간, ② 직권심리 의결서 제출기간에
결정청구가 가능하다.

(4) 객체적 요건

제 136조 제 1항 각호의 경우 결정을 할 수 있다.

(5) 결정의 효과 - 소급효 (제 136조 10항 준용)

소급·판정효의 명세서로 출원, 공개된 것으로 본다

2. ~~결정~~ 결정 무효심판 절차에서의 결정 청구 - 제 137조 3항

(1) 즉체적 요건

특허권자가 청구 가능하다

(2) 시기적 요건 - 제 137조 3항 본문

① 답변서 제출기간, ② 직권심리 의결서 제출기간, ③ 결정
의 청구를 한 뒤 통달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

3. 결정심판

(1) 결정심판의 이, 취리 - 제 136조

특허권과 발명권 조항을 위하여 특허권의 내용은 보통 결정할 수 있다.

(2) 국제적 요건

특허권이 인정된다

(3) 내국적 요건 - 제 136조 2항

~~특허심판~~ ① 지식산업청내 특허 심판원에 계속하여 특허권
 직책까지, ②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
 에는 청구하지 못한다.

4. 행정청의 결정제도를 두는 취리

① 무효심판 및 결정의 무효심판 절차에서 결정을 같이
 행하여 "판정의 문헌 기록 병리" 를 비공개한다.

②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하여 소송절차를 도모한
 다.

5. 설명 (2)

1. 결정심판의 절차 - 제 136조 10항

결정은 호급통과이다.

2. 결정심판결과 책임대위

(1) 사실사실

경정심적의 직권으로 특허발명권이 소급적으로 변경
된다고 볼 수 없고, 경정심적 직권은 책임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2) 결론

대법원은 "법률상"에 해당하므로 법률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소이며, 경정심판결이 아니라 다
리 한번 변경할 수 있는 바 판례가 해당한다.

3. 결론

① 대법원은 경정심판이 인용결정 또는 타당 판결로
인용할 수 없다.

② "경정심" 명칭을 기준으로 권호성 여부를 판단하
여 한다.

③ 권호성 인정된 경우 상고인용, 복정지정 기각판결
을 할 것이다.

4. 법률(3)

1. 소송과의 관계 - 제164조 2항

법원은 특허에 관한 심적이 직권으로 재사실의 그 결
과를 증명할 수 있다.

2. 시사제

법원의 소송 절차 중점은 어디까지나 "법관의 재량"
이므로, 당사자가 절차 중점을 요구할더라도 법원
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중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검토

어디까지나 법관의 재량에 이상 판례가 판정된다.

4. 결론 - 무극량 부담

① 무은 소송 중점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대상이든 어디까지나 법관의 재량이다.

③ 따라서 진보성 판단이 무의미하게 되므로 심판 결
과를 보면서도 기대해야 된다는 무어 극량은 부담된다.

V. 석명(4)

1. 진보성 의미, 취리 - 제 29조 제 2항

기술발전 속도는 워낙 동양의 기술자가 쉽게 설명할 수 없
을 것을 모른다.

2. 결합 발명 여부 - 적극

발명 A + B + C는 공리기술이 결합된 결합 발명에 의

응답된다.

3. 결합발명 권보성 판단법칙 - 시기상시

(1) 판단대상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원래기술의" 기술대상이 권보성 판단대상이다.

(2) 판단방법

특시의 사례에 적용하시 기조적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권체기술의 구성은 본질을 다 거버해야 하며, 결합된 권체기술의 범영의 같은 폭라도 고려해야 한다.

(3) 선행기술 결합요건

⊕ 여러 인용문헌을 결합하면 수 해당 발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양이 동기" 등 선행문헌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권보성을 인정할 수 있다.

4. 사후적 고칠 금지

발명의 명세서의 기술을 알고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5. 사안

① 각 구성내 공리피해가능 사정만으로 곧바로 권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② 결합된 특허발명은 특수 구성의 각각의 기능과 권
해 다음 새로운 기능을 수행한다.

③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상승효과"가 발휘된다.

④ 명세서 기재내용을 본 뒤, 흔히파라고 평양라는 것
은 신규적근득이다.

위주장 들을 통하여 반박이 가능하다.

(7)



[문제-4]

2. 설명(1)

1. 공리예외 즉각 이익, 취리 - 제 30조

조기공개 유지를 위해 특정 출원 발명 평 특허출원권 판
 사시 선행 공리를 비공리로 간주한다.

2. 공리의 성질 - 의 4에 의한 금지

(1) 공개성

권리자 ~~의~~ 의 4에 어떤 것이든 출발하고, 반드시
 권리자가 "직접"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사안

2015년 3월 27일 진행된 2014년 10월 31일까지 2015년
 명 X를 공개하였더라도, 해당 발명 X는 발명권자 무
 인으로부터 "직접"한 것이며, 무은 2015년 공리를 통
인 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2015년 공개는 무의 의 4에
의한 공리라고 판단된다.

3. 공리예외 즉각의 효과

(1) 공개성

최초 공리에 대하여 적법하게 공리예외 즉각 절차를
 밟은 경우, 이와 동일성이나 인정되는 후속 공리 청구에
 도 공리예외 즉각 절차의 효력이 미치지,

(2) 사안

① ~~甲~~은 회군의 공리인 2015년 3월 2일 2개의 강행위
회칙을 제정하였으며, 2015년 ~~2~~ 3월 21일 권
행된 2의 공리는 회군의 공리와 "동일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공리~~회칙~~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4. 결론 - 가 극강 부당

결국 공리~~회칙~~의 예외 극강은 각법판에 가 극강은 부당하다.

3.5

표. 1.1 (2)-1)

1. 국내유년권 극강 제도

(1) 국내유년권 극강 제도 의미, 취지 - 제 55 조

국내유년권 극강과 균형을 위하여, 대항인권 선출원인으로 한
판정권을 공급하여주는 제도이다.

(2) 요건, 권리 - 제 55 조 1항, 2항

① 특허를 받은 자는 2가, ② 선출원의 권리 명세서 작성 지연
의 범위에, ③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시 출원은 때
야 한다. ~~제 55 조~~ ④ 출원인 특허와 선출원 판정을 해야
한다.

(3) 효과 - 제 55 조 3항

~~판정사각~~, 특허요건 판단시점이 선출원일로 공급된다

2. 다만

- ㉠ ~~이하~~ ① X'는 선행공리 ~~이후~~로부터 권보성이 복
 적당할 가능성이 높다.
- ② ~~따라서~~ 또한 개량발명은 판정시점이 소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③ 따라서 회칙의 공리인 2015년 3월 2일 부터 1년
 인 "2016년 3월 2일" 이내에 발명 X에 대하여 공
리에외극장은 수반하여 극내 수형권 극장을 출원한 환경
 의 발명 X와 X'를 대비 출원인 보호 받을 수 있다.

3

III. 선출(2)-2)

- L 조약유선권극장제도
- (1) 조약유선권극장제도 의의, 취리 - 제54조
 발명의 극대적 보호를 위해 선출위원의 판정시점은 소
급되지 않는 것이다.
- (2) 출원, 권리 - 제54조 2항, 3항, 4항, 5항
 - ① 선출위원인 이 ② ~~조약유선~~ 선출위원의 회칙 명세서
 및 조약에 범위에선 선출위원으로부터 1년 이내 출원하
 야 한다. ③ 출원인 회칙 출원 국가명, 출원 영역임을
 적어야 한다. ④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3) 권리 - 제54조 1항
 선출위원의 회칙 명세서, 조약의 범위 내에서 특허요건

